

# 200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 1. 회부예산

가. 200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6. 11. 21 (화) 평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6. 11. 27(월)

다. 상정일자 : 제13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 7) : 상정, 개요설명, 검토보고, 심사  
- 의회사무과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8) : 심사  
-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1) : 심사  
- 문화관광과, 환경복지과, 산림과, 건설과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2) : 심사  
- 지역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스포츠사업단, 보건사업과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3) : 심사  
- 농정과, 축산과, 기술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8) : 계수조정, 심사보고서 채택

## 3.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가. 제안이유

- 200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고 평창군의회 심의·확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200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 총 규모는 2,047억 8,4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7,500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억 3,700만원이 증액된 1,636억 1,700만원, 특별회계가 23억 1,200만원이 감액되어 411억 6,700만원임.
- 세입예산은
  - 일반회계가 지방세 138억 7,100만원, 세외수입 122억 3,500만원, 지방교부세 924억 9,900만원, 재정보전금 30억원, 국·도비보조금 420억 1,200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45억 3,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66억 3,400만원임.
- 세출예산은
  - 일반회계가 경상예산 500억 7,500만원, 사업예산 1,008억 5,000만원, 채무상환 54억 3,400만원, 예비비 등 기타 72억 5,800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34억 1,500만원, 사업예산 361억 2,400만원, 채무상환 15억 6,800만원, 예비비 등 기타 6,000만원임.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함경호)

### 가. 2007년도 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년도당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예산액	%		증 감 액	%	
합	계	204,783	100	205,158	△375	△0.1	
일	반 회 계	163,616	78.8	161,680	1,936	1.1	
특 별 회 계	상 수 도 공 기 업	19,970	9.7	7,467	12,502	167.4	
	기	소 계	21,196	10.3	36,011	△14,814	△41.1
		주 택 사 업	60		547	△487	△89.0
	타	의료보호기금	594		394	199	50.5
		기초생활보장 기 금	444		444	0	0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72		0	72	-
		수 질 개 선	19,073		31,563	△12,489	△395
		공유재산관리	952		3,061	△2109	△68.8

- 200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2,047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0.18%인 3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고,
- 이중 일반회계는 1,636억 1,650만원으로 19억 3,600만원(1.18%)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411억 6,700만원으로 23억 1,100만원(5.6%)이 감액되었음.

- 전체회계별 예산규모면에서는 일반회계가 79.9%, 특별회계는 20.1%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 나. 일반회계 예산

### 1)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당초예산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163,616	100	161,680	1,936	1.2
자체수입	소 계	26,106	15.9	23,470	2,636	11.2
	지방세	13,871	8.4	12,064	1,806	14.9
	세외수입	12,235	7.4	11,406	828	7.25
의존수입	소 계	137,509	84.0	138,208	△699	△0.5
	지방교부세	92,498	56.5	92,873	△375	△0.4
	재정보전금	3,000	1.8	3,000	0	0
	국.도비보조금	42,011	25.6	42,335	△323	△0.7

-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636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2%인 19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고,
  - 자체수입은 261억 600만원으로
    - 지방세수입 138억 7,100만원, 세외수입 122억 3,500만원이고
  - 의존수입은 1,375억 9,800만원으로
    - 지방교부세 924억 9,800만원, 재정보전금 30억원, 보조금 420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이를 세목별로 보면

① 지방세 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당초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13,871	100	12,064	1,806	14.9
보 통 세	12,791	92.2	11,141	1,649	14.8
목 적 세	720	5.1	622	97	15.5
과년도수입	360	2.5	300	60	20.0

- 보통세는 전년대비 14.8%인 18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주민세(37.5%), 도축세(19.1%), 담배소비세(14.7%), 재산세(12.4%)가 전년대비 증액된 것임.
- 보통세중 주민세의 세수추계가 증액된 사유는 지난 7월 발생한 수해로 인해 수해복구공사 수주를 위하여 타지역에서 전입한 업체들의 소득세할 주민세와 법인세할 주민세가 증액된 것임
- 목적세는 전년대비 15.7%인 97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 과년도 수입은 지난해보다 20%인 6,0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아울러 지역경기침체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2006년도 11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전년도 48억 6,900만원 보다 21억 8,200만원(44.8%)이 증액된 70억 5,100만원으로 이에 대하여는 특단의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② 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당초예산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12,235	100	11,406	828	7.2
경상적 세외수입	소 계	9,445	77.1	5,897	3,547	60.1
	재산임대	226	1.8	226	0	0
	사용료	375	3.0	334	41	12.2
	수수료	3,537	28.9	1,443	2,093	145.0
	사업	1,712	13.9	1,586	126	7.9
	징수교부금	732	5.9	646	85	13.1
	이자	2,860	23.3	1,660	1200	72.2
임시적 세외수입	소 계	2,790	22.8	5,509	△2,718	△49.3
	재산매각	2	0.01	6	△4	△66.6
	순세계잉여금	2,000	16.3	5,000	△3,000	△60.0
	전입금	60	0.4	0	60	0
	부담금	250	2.0	250	0	0
	잡수입	452	3.6	226	225	99.5
	과년도수입	25	0.2	25	0	0

- 세외수입의 총규모는 122억 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7.2%인 8억 2,8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 경상적세외수입인 수수료수입과, 이자수입이 큰 폭으로 증액한데 기인한 것으로
  - 임시적세외수입인
    - 사용료 수입이 4,100만원, 수수료 수입이 20억 9,300만원
    - 징수교부금 수입이 8,500만원, 이자수입이 12억원씩
    - 각각 증액되었음.

③ 지방교부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당초예산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예 산 액	%		증감액	%
계	92,498		92,873	△375	△0.4

-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 지방교부세 총액은 전년대비 0.4%인 3억 7,500만원이 감액된 924억 9,800만원임.
- 지방교부세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보통교부세는 891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고,
  - 종합토지세 보전금은 30억원,
  - 분권교부세는 3억 8,800만원으로,
- 예산총액의 56.5%를 차지하고 있음.

④ 재정보전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당초예산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예 산 액	%		증감액	%
계	3,000	-	3,000	-	-

-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시·군의 재정보전을 위하여 시·군에 지원하는 것으로 전체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 재정보전금의 총규모는 30억으로 지난해와 변동이 없음.

⑤ 보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당초예산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예 산 액	%		증감액	%
합 계		42,011	100	42,335	△323	△0.7
국 고 보 조 금	소 계	33,629	80.0	34,145	△515	△1.5
	국고보조금	15,484	36.8	15,959	△475	△2.9
	국가균형특별회계	17,189	40.9	17,863	△673	△3.8
	기 금	955	2.2	321	633	197.1
시·도비보조금		8,382	19.9	8,189	192	2.3

- 국고보조금 336억 2,900만원은 전년대비 1.5% 감액된 것으로
  - 이 중 국고보조금에서 5억 1,500만원,
  - 국가균형특별회계는 4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고,
  - 기금은 6억 3,300만원이 증액 되었음.
- 시·도비보조금은 총 83억 8,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인 1억 9,200만원이 감소되었고,
- 반영된 보조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도비 보조금 주요사업 내시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내시액	소관부서
국 고	신활력사업	2000	기획감사실
	생계급여	3500	환경복지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000	건 설 과
	개발촉진지구 지원	4956	"
	농촌정부권기반 확충사업	1500	"



구분	사 업 명	내시액	소관부서
국 비	전원마을 조성사업	1500	건 설 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485	재난안전관리과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237	보건사업과
도 비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245	기획감사실
	농공단지 조성사업	130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105	민원봉사과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150	문화관광과
	오대산 불교문화 축전	100	"
	진부비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	495	환경복지과
	생계급여	437	"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	250	"
	노인교통수당	192	"
	문화복지회관 건립	300	"
	숲가꾸기	166	산 림 과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	100	"
	산촌개발사업	126	"
	운송지구 발기반 정비사업	121	건설과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196	"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	200	"
	흥정리 소교량 가설	250	"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600	지역도시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96	재난안전관리과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74	보건사업과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122	"	

- 특히 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같이 중요한 중앙과 도의 지원재원으로
  - 우리군의 전체 세입에 25.7%를 점하고 있어
  - 앞으로 집행기관의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으로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당초예산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예 산 액	%		증감액	%
합 계		163,616	100	161,680	1,936	1.1
경상 예산	소 계	50,075	30.6	46,480	3,594	7.7
	인 건 비	28,027	17.1	25,811	2,216	8.5
	경상적경비	22,047	13.4	20,669	1,378	6.6
사업 예산	소 계	100,849	61.6	104,036	△3,186	△3.0
	보 조 사 업	66,283	40.5	60,530	5,752	9.5
	자 체 사 업	34,566	21.1	43,505	△8,939	△20.5
채무 상환	소 계	5,433	3.3	477	4,956	1038.9
	지방채상환	5,433	3.3	477	4,956	1038.9
	채무부담 행위상환	0	0	0	0	0
예비 비등	소 계	7,258	4.4	10,685	△3,427	△32.0
	예 비 비	1,679	1.0	2,052	△372	△18.1
	기 타	5,578	3.4	8,633	△3,055	△35.3

- 200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예산규모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예산대비 1.1%인 19억 3,600만원이 증가한 1,636억 1,600만원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7.7%인 35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 인건비가 8.5%, 경상적경비가 6.6%씩 각각 증액되었음.
  -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3.0%인 31억 8,600만원이 감액되었고,
    - 보조사업이 9.5%, 자체사업이 20.5%씩 각각 감액되었음.
  - 채무상환은 전년대비 49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 지방채 상환에서 1038.9%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수해복구에 대한 우리군 부담금을 지방채로 부담함에 따라 기인된 것임.
  - 예비비등은 전년대비 32%인 34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고
    - 예비비가 18.1%, 기타 35.3%가 각각 감액되었음.

①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년도 당초예산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예산액	%		증감액	%
합계		163,616	100	161,680	1,936	1.1
일반행정비	소계	44,829	27.4	41,728	3,100	7.4
	입법및선거관리	654		1,339	△684	△51.0
	일반행정비	44,174		40,388	3,785	9.3
사회개발비	소계	56,295	34.4	59,617	△3,321	△5.5
	교육 및 문화	7,749		11,136	△3,386	△30.4
	보건 및 생활 환경개선	22,356		21,445	910	4.2
	사회보장비	15,444		16,344	△899	△5.5
	주택 및 지역 사회개발	10,745		10,691	54	0.5
경제개발비	소계	55,204	33.7	57,633	△2,428	△4.2
	농수산개발비	20,100		19,721	378	1.9
	지역경제개발비	5,241		1,824	3,417	187.3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28,610		34,675	△6,064	△17.4
	교통관리비	1,251		1,411	△159	△11.2
민방위비	소계	172	0.1	171	1	0.5
	민방위관리비	172		171	1	0.5
지원 및 기타 경비	소계	7,113	4.3	2,529	4,584	181.2
	지방채상환	5,433		477	4,956	1038.9
	예비비	1,679		2,052	△372	△18.1

○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 일반행정비는 전년대비 7.4%가 증액된 448억 2,900만원으로
  - 이중 입법 및 선거관리는 51.1%인 6억 8,400만원이 감액된 6억 5,400만원이고 일반행정비는 9.4%인 37억 8,500만원이 증액된 441억 7,400만원임.
- 사회개발비는 전년대비 5.6%가 감액된 562억 9,500만원으로
  - 이중 교육 및 문화비는 30.4%인 33억 8,600만원이 감액된 77억 4,900만원이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4.2%인 9억 1,000만원이 증액된 223억 5,600만원이며,  
사회보장비는 5.5%인 8억 9,900만원이 감액된 154억 4,400만원  
이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0.5%인 5,400만원이 증액된 107억 4,500만원임.
- 경제개발비는 전년대비 4.2% 감액된 552억 400만원으로
  - 농수산물개발비가 1.9%인 3억 7,800만원이 증액된 201억원이고,  
· 지역경제개발비가 187.3%인 34억 1,700만원이 증액된 52억 4,100만원이며,  
·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17.5%인 60억 6,400만원이 감액된 286억 1,000만원이고,  
· 교통관리비가 11.3%인 1억 5,900만원이 감액된 12억 5,100만원임.
- 민방위비는 전년대비 1%가 증액된 1억 7,200만원임
-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난해보다 181.2%인 45억 8,400만원이 증액된 71억 1,300만원으로
  - 지방채상환이 54억 3,300만원,  
· 예비비가 16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사회개발비(34.4%)와 경제개발비(33.7%)가 전체 예산의 68.1%를 차지하고 있음.

○ 각 장별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첫째 일반행정비는 448억 2,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27.4%를 차지하고 있으며,
  - 신활력사업(Happy700포럼 운영, 아카데미 위탁 운영) 1억 3,000만원,  
서울농생대 군비 출연금 38억원,  
손해배상금 및 구상금 청구사건 가집행금 2억 5,6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4억 3,4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D/B구축 용역비 2억 7,2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억 8,300만원 등이 있음.
- 둘째 사회개발비는 5.6%가 감액된 562억 9,500만원으로,
  -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억원,  
월정사 성보박물관 전시관 기본 및 실시설계, 부지정비 등 공사 7억 5,000만원,  
상원사 동종종각 이축 및 대피시설 공사 2억 5,500만원,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 10억 6,3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교반시설 설치 3억 6,000만원,  
비위생매립장 정비 19억 7,7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15억 5,000만원,  
문화복지센터 건립 12억 8,100만원,  
도암면 분회 경로당 신축 5억원,  
집단지주지역 공공시설 부지매입 7억원,  
취락지구 개발사업 7억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32억원,  
시가지 주차장 조성 6억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4억 8,500만원,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 5억원 등이 있음.

- 셋째 경제개발비는 전년대비 4.2%감소된 552억 400만원으로.
  -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16억 3,400만원,
  - 방림농공단지 조성사업 5억 5,800만원,
  - 노동계곡 캠핑장 조성사업 10억 7,700만원,
  - 산촌개발사업 8억 8,200만원,
  -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 4억원,
  - 산림경영모델 숲 조성 5억 6,000만원,
  - 산림병해충방제 6억 4,300만원,
  - 정주기반 확충사업 18억 7,200만원,
  - 운송지구 발기반정비사업 11억 1,600만원,
  - 소하천정비사업 14억 2,700만원,
  -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 49억 5,600만원,
  - 군도 확포장 43억원,
  -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16억원,
  -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6억 4,600만원,
  - 농촌 마을길 정비 18억원,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4억 6,500만원,
  - 평창종합운동장 개보수 2억원,
  - 대관령 전지훈련장 3억원,
  -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0억 2,800만원,
  - 신활력사업(평창연합그린투어사업단 운영, 브랜드 마일리지 도입, 농박브랜드화 사업, 농촌관광홍보시스템 구축 및 마케팅,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홍보, 농·특산물 품질인증 규격집 제작, Happy700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개발, 농산물 공동 선별 기자재 및 시설지원) 16억 3,500만원,
  -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6억 9,400만원,
  - 지역특화사업 5억원,
  -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7억 7,200만원,
  - 채소병해충(무사마귀병) 방제지원 4억 1,600만원 등이 있음.

- 넷째 민방위비는 전년대비 1.0%가 증가된 1억 7,200만원으로
  -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및 민방위 교육 관련 경비, 일반운영비 등의 필수경비임.
-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난해보다 181.2%인 45억 8,400만원이 증가된 71억 1,300만원으로
  - 지방채 조기상환 미발행금 재원 보전 50억원
  - 청사정비기금 원금 3억 9,000만원 등이 있음.

#### 다. 특별회계 예산 세입·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당초예산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예 산 액	%		증감액	%	
합 계	41,167	100	43,478	△2,311	△5.3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9,970	48.5	7,467	12,502	167.4	
기 타 특 별 회 계	소 계	21,196	51.5	36,011	△14,814	△41.1
	주 택 사 업	60	0.1	547	△487	△89.0
	의료보호기금	594	1.4	394	199	50.5
	기초생활보장 기 금	444	1.0	444	0	0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72	0.1	0	72	-
	수 질 개 선	19,073	46.3	31,563	△12,489	△39.5
	공유재산관리	952	2.3	3,061	△2,109	△68.8

#### 1) 세입예산

-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411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5.3%인 23억 1,100만원이 증액하였고,



회계별로 살펴보면,

- 우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67.4%인 125억 200만원이 증액된 199억 7,000만원으로
  - 주요세입은 상수도영업수익이 39억 9,500만원이고,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원,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 등 자본적 수입 157억 2,500만원, 전년도 미수금이 1억 5,000만원임.
- 둘째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9%인 4억 8,70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으로 세입은 지난년도 원금 3,500만원, 지난년도 이자 2,500만원임
- 셋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0.5%인 1억 9,900만원이 증액된 5억 9,400만원으로
  -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1,600만원, 국고보조금 6,200만원, 도비보조금 1,500만원임
- 넷째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4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 세입은 주민소득지원자금 원금회수와 용자금 이자수입임
- 다섯째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는 7,200만원으로
  - 세입은 공공예금 이작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5,500만원, 한전의 기본지원사업비 1,600만원임
- 여섯번째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9.5%인 124억 8,900만원이 감액된 190억 7,300만원으로
  -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1억 6,500만원, 이자수입 1억 5,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2억 8,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1억원, 원인자 부담금 1억 6,000만원, 국고보조금 117억 8,400만원, 기금 44억 3,400만원임.
- 마지막으로 공유재산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8.8%인 21억 900만원이 감액된 9억 5,200만원이며
  -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매각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임.

## 2) 세출예산

○ 2007년도 평창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예산규모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예산대비 5.3%인 23억 1,100만원이 감액된 411억 6,700만원으로 회계별로 주요 세출을 살펴보면

- 우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 인건비가 22억 1,000만원, 신규급수공사 3억원, 지역개발기금 등 이자 2억 6,100만원,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3억원, 봉평상수도 급수관로 확장 6억원, 하안미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2억원, 노후관로 교체사업 2억원, 누수탐사 및 블럭시스템 구축 1억원, 진부·월정상수도 통합공사 3억 7,500만원, 진부상수도 취수원 이전 및 알펜시아 상수도 공급공사 107억 1,300만원, 지역개발기금 등 고정부채 원금 상환 13억 660만원 등임

- 둘째 주택사업특별회계는

- 6,000만원 전액 일반회계전출금임

- 셋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 일시사역 인부임 등 인건비 3,100만원, 나머지는 대부분 의료보호 및 급여사업임.

- 넷째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 기초생활보장기금 용자금과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음.

- 다섯째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는

- 기본지원사업비 1,6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용자금 5,600만원임.

- 여섯번째 수질개선특별회계는

-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5억원, 대화 진부 하수종말처리장 4억 5,500만원,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 및 마을하수도 사업 57억 9,300만원, 대화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 1억원,

진부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 3억원,  
평창하수종말처리장 등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11억 5,100만원 등이며,  
그 외에는 상·하수도 사업소 및 위생시설관리운영에 대한  
필수경비임.

- 마지막으로 공유재산특별회계는
  - 세출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용역비 8,000만원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마하생태관광지와 용평체육공원  
부지매입비 8억 7,000만원 등임.

## 라. 계속비사업

○ 계속비사업은 총 20건의 사업에 총 2,106억 4,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 2007년도 투자계획은
  - 미탄면 소각로 설치공사 22억 3,4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공사 4억 5,400만원,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 10억 6,600만원,  
평창군문화복지센터건립 2억 5,000만원,  
평창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25억 6,100만원,  
봉평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17억원,  
하수관거정비공사 88억 9,000만원,  
방림마을하수도 시설공사 1억 4,600만원,  
용전마을하수도 시설공사 1억 3,300만원,  
계촌마을하수도시설공사 1억 6,300만원,  
면온 마을하수도 시설공사 9,100만원,  
약수마을하수도 시설공사 12억 4,600만원,  
무이2리 마을하수도 시설공사 12억 7,100만원,  
흥정마을하수도 시설공사 7억 6,300만원 등  
총 14개 사업에 222억 9,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대화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도돈마을하수도 시설공사, 상동마을하수도 시설공사, 속사마을하수도 시설공사, 하송빈마을하수도 시설공사, 하안미마을하수도 시설공사, 이상 6건의 사업은 계속비 사업에 투자계획을 승인받아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나 2007년도에는 투자계획이 없음.

- 아울러 계속비사업은 장기투자계획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획된 사업이 최우선적으로 투자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전년도 계속비 투자계획과 대비하여 보면 대부분의 사업비가 상향조정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기한 또한 늘어나 예산행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예산운영에 관별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임.

## 5. 종합검토의견

-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경상적예산과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추진을 억제하고 시행중인 사업과 국·도비 내시사업, 수해복구사업 위주로 편성되었고, 이에 따라 2007년도 예산은 수해복구의 항구복구 및 계획된 예산과 필수사업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기존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원만하게 추진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며 2007년도 예산배분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는 증가하였고,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는 감소되었음

### - 세입측면에선

-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하여 중앙과 도의 예산확보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 순수 자주재원으로 분류되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206억 3,8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인 2,047억 8,300만원대비 10%를 점유하고 있어 열악한 우리군 재정형편을 고려하면, 양질의 대주민 서비스를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탈루, 은닉세원 추적을 통해 지방세

수입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 지방세 체납액이 전년에 비해 21억 8,200만원이 증가하여 70억 5,100만원에 이르고 있어 군재정의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세출에서는

-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중 다목적 교육관 신축 사업비(1억원) 등은 국·도비 지원사업의 성격이라고 판단되어 수해피해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우리군의 재정력을 감안할 시 보조금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향후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됨.

○ 이를 비목별로 살펴보면

- 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같이 중요한 중앙과 도의 지원 재원으로
  - 우리군의 전체 세입에 25.6%를 점하고 있어
  - 앞으로 집행기관의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으로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 채무상환은 전년대비 49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 지방채 상환에서 1,038.9%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수해복구에 대한 우리군 부담금을 지방채로 부담함에 따라 기인된 것이며

채무부담행위상환은 2005년에 모두 상환된 것으로 나타났음.

-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3%인 23억 1,100만원이 감액된

411억 6,700만원으로

- 특별회계의 주요세입은 예치금 이자(전년도 이월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주세입이고, 세출은 고유목적사업비 및 이월금으로 쓰이고 있음

- 계속비사업은 장기투자계획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획된 사업이 최우선적으로 투자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전년도 계속비 투자계획과 대비하여 보면 9개사업에 73억 3,900만원이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기간 또한 늘어나 예산행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실무부서의 예산운영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으로 나타났음.

- 또한 서울대 농생대 토지보상금 부담금 38억원은 우리군으로선  
불가피한 부담이라 판단되나 자금의 흐름을 계속 관리하고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며
- 이러한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평창군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예산심사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손해배상청구소송 가집행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그 산출 근거는 ?	○ 예년도의 평균금액임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기준은 ?	○ 금년까지는 2,000만원이하의 주민 불편해소는 위한 소규모 사업이었으나, 내년부터는 내규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임
○ 영세농가 전기시설 개보수는 어떠한 사업에 지급하는 것인가 ?	○ 전기 안전점검비를 지원하는 것임 그 결과에 따라 시설비는 한전에서 무상 지원함.
○ 여비가 상향조정된 사유는 ?	○ 여비지원 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증감한 부분임
○ 서울농생대 관련 출연금은 어디에 지출하는 것인가 ?	○ 사업주체가 서울대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 지출하는 것임
○ 운수업계 보조금은 의무사항인가 ?	○ 의무사항이며, 재원은 보통세의 주행세 재원으로 리터당 단가에 맞춰 주는 것임
○ 수하분교 시설개선공사와 관련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가 ?	○ 국악, 음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관내 폐교를 군에서 임대하여 개인 사업자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군에 들어오는 수입은 ?	○ 없으며, 임대료는 개인사업자가 지불하고 있음.
○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방림면이 누락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	○ 방림면은 오지개발사업 대상지역임.
○ 소교량 가설은 어느 지역에 가설할 것인지 선정되어 있는가 ?	○ 3곳을 선정하였으나, 아직까지 확정하지 않은 상태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li> <li>○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을 실시한 읍면은 ?</li> <li>○ 의용소방대 장비지원비 사용용도는?</li> <li>○ 대관령 전지훈련장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는 ?</li> <li>○ 한센병 환자 생계비 지원과 관련 우리군내 한센병 환자는 ?</li> <li>○ 신활력 사업은 언제까지 하는 사업인가 ?</li> <li>○ 농촌민박시설자금 이차본전과 관련 주요 사업내용은 ?</li> <li>○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사업 운영 실적은 ?</li> <li>○ 봉평 메밀 영농조합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li> <li>○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화장실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고 있으며 개보수가 시급하지 않은가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분만 파악하고 있는 실정임</li> <li>○ 평창, 봉평, 도암 3개읍면임</li> <li>○ 읍면별 의용소방대에 산불진화 장비를 지원하는 것임</li> <li>○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1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음.</li> <li>○ 3가구 3명임</li> <li>○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li> <li>○ 민박시설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것임</li> <li>○ 내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임.</li> <li>○ 메밀제품 가공 생산을 하고 있음.</li> <li>○ 화장실 정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개보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음.</li> </ul>

## 6. 토 론 요 지

(없 음)

## 7. 수정안의 요지

(없 음)



## 8. 심 사 결 과

- 일반회계 : 수정의결
- 특별회계 : 원안의결

## 9.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붙 임 : 200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의결조서 1부. 끝.

# 200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수정의결조서

## 1. 예산총칙 수정

○ 제1조

(단위 천원)

회 계 명	지방자치단체제출 예산액	수정예산액	증 감
계	204,783,612	204,404,612	△379,000
일반회계	163,616,500	163,616,500	△379,000
특별회계	41,167,112	41,167,112	0

- 제2조 : 세입·세출 명세는 별첨"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3조 : 변동사항 없음
- 제4조 : 변동사항 없음
- 제5조 : 변동사항 없음
- 제6조 : 변동사항 없음
- 제7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2,789,579천원)으로 한다

## 2. 예산 수정의결 내역

가. 세입총괄

(단위 천원)

회계별	지방자치단체 제출 예산액	수 정		수정예산액	비 고
		감 액	증 액		
계	204,783,612	379,000	0	204,404,612	
일반회계	163,616,500	379,000	0	163,616,500	
특별회계	41,167,112	0	0	41,167,112	

○ 일반회계 세입내역

(단위 천원)

과 목		지방자치 단체제출 예산액	수 정		수 정 예산액	수정사유 및 내 역
장·관·항	목		감 액	증 액		
계		163,616,500	379,000	0	163,237,500	
100 지방세수입		13,871,031	0	0	13,871,031	
200 세외수입		12,235,089	0	0	12,235,089	
300 지방교부세		92,498,920	0	0	92,498,920	
4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3,000,000	0	0	3,000,000	
500 보조금		42,011,460	379,000	0	41,632,460	
	510 국고보조금 등	33,629,326	295,000	0	33,334,326	
	512 국가균형 특별회계	17,189,999	295,000	0	16,894,999	산지유통센터지원 △45,000 지역특화사업 △250,000
	520 시도비보조금 등	8,382,134	84,000	0	8,298,134	
	521 시도비보조금 등	8,382,134	84,000	0	8,298,134	산지유통센터지원 △9,000 지역특화사업 △75,000

나. 세출총괄

(단위 천원)

회계별	지방자치단체 제출 예산액	수 정		수정예산액	비 고
		감 액	증 액		
계	204,783,612	1,488,690	1,109,690	204,404,612	
일반회계	163,616,500	1,488,690	1,109,690	163,237,500	
특별회계	41,167,112	0	0	41,167,112	

○ 일반회계 세출내역

(단위 천원)

과 목			지방자치 단체제출 예산액	수 정		수 정 예산액	수정사유 및 내 역
관	항	세항		감 액	증 액		
계			163,616,500	1,488,690	1,109,690	163,237,500	
1000 일반행정비			44,829,510	0	0	44,829,510	
2000 사회개발비			56,295,917	109,690	0	56,186,227	종합관광안내소관리 인부임 △9,690 기타축제행사지원 △100,000
3000 경제개발비			55,204,890	1,379,000	0	53,825,890	노산성 소공원 조성 사업 △150,000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 △400,000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75,000 지역특화사업(향토자 원육성) △500,000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사업 △90,000 도로변농산물판매장 시설 지원사업 △107,000 벼 건조저장 및 가공시설 보완사업 △57,000
4000 민방위비			172,886	0	0	172,886	
5000 지원및기타 경비			7,113,297	0	0	7,113,297	
5400 예비비			1,679,889	0	1,109,690	2,789,579	예비비 1,109,690

# 200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6. 11.

제출자 : 평창군수

## 1. 제안이유

200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고 평창군의회 심의, 확정을 받으려 하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200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4,78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7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37백만원이 증액된 163,617백만원, 특별회계가 2,312백만원이 감액되어 41,167백만원 임.

### 나.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지방세 13,871백만원, 세외수입 12,235백만원, 지방교부세 92,499백만원, 재정보전금 3,000백만원, 국·도비보조금 42,01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4,533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16,634백만원임.

### 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경상예산 50,075백만원, 사업예산 100,850백만원, 채무상환 5,434백만원, 예비비등 기타 7,25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3,415백만원, 사업예산 36,124백만원, 채무상환 1,568백만원, 예비비등 기타 60백만원 임.

# 관계법령발췌서

## □ 지방자치법 제118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년도개시 50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년도개시 15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년도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 □ 지방재정법 제40조 (예산의 내용)

-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 · 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 · 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 지방재정법 제41조 (예산의 과목구분)

-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 · 관 · 항으로 구분하며, 세출예산의 경우 세항 및 목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목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재정법 제42조 (계속비)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행위)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한도액의 산정에 있어서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
  2.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 안의 것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상환하는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 예 산 총 규 모

(단위 : 천원)

2007년 【본예산】

회 계 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 감
총 계	204,783,612	205,158,943	△375,331
일 반 회 계	163,616,500	161,680,116	1,936,384
특 별 회 계	41,167,112	43,478,827	△2,311,715
상 수 도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9,970,313	7,467,370	12,502,943
기 타 특 별 회 계	21,196,799	36,011,457	△14,814,658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60,000	547,001	△487,001
의 료 보 호 기 금 특 별 회 계	594,258	394,991	199,267
기 초 생 활 보 장 기 금 특 별 회 계	444,228	444,228	0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특 별 회 계	72,395	0	72,395
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	19,073,895	31,563,299	△12,489,404
공 유 재 산 관 리 특 별 회 계	952,023	3,061,938	△2,109,915



# 제 입 · 제 출 예 산 총 관 표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예산액	구성비율 %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율 %	증감	예산액	구성비율 %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율 %	증감	예산액	구성비율 %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율 %	증감
계	204,783,612	100	205,158,943	100	△375,331	163,616,500	100	161,680,116	100	1,936,384	41,167,112	100	43,478,827	100	△2,311,715
경 상 예 산	53,489,883	26	49,562,546	24	3,927,337	50,075,134	31	46,480,847	29	3,594,287	3,414,749	8	3,081,699	7	333,050
인 건 비	30,711,345	15	28,139,037	14	2,572,308	28,027,987	17	25,811,705	16	2,216,282	2,683,358	7	2,327,332	5	356,026
경 상 적 경 비	22,778,538	11	21,423,509	10	1,355,029	22,047,147	13	20,669,142	13	1,378,005	731,391	2	754,367	2	△22,976
사 업 예 산	136,973,256	67	142,233,258	69	△5,260,002	100,849,693	62	104,036,302	64	△3,186,609	36,123,563	88	38,196,956	88	△2,073,393
보 조 사 업	84,602,083	41	91,729,537	45	△7,127,454	66,283,432	41	60,530,970	37	5,752,462	18,318,651	44	31,198,567	72	△12,879,916
자 체 사 업	52,371,173	26	50,503,721	25	1,867,452	34,566,261	21	43,505,332	27	△8,939,071	17,804,912	43	6,998,389	16	10,806,523
채 무 상 환	7,001,808	3	2,677,247	1	4,324,561	5,433,408	3	477,075	0	4,956,333	1,568,400	4	2,200,172	5	△631,772
지 방 채 상 환	7,001,808	3	2,677,247	1	4,324,561	5,433,408	3	477,075	0	4,956,333	1,568,400	4	2,200,172	5	△631,772
채 무 부 담 행 위 상 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예 비 비 등	7,318,665	4	10,685,892	5	△3,367,227	7,258,265	4	10,685,892	7	△3,427,627	60,400	0	0	0	60,400
예 비 비	1,679,889	1	2,052,219	1	△372,330	1,679,889	1	2,052,219	1	△372,330		0		0	0
기 타	5,638,776	3	8,633,673	4	△2,994,897	5,578,376	3	8,633,673	5	△3,055,297	60,400	0	0	0	60,400

【 세 세 항 별 】

세

합